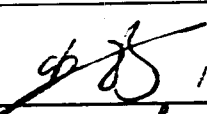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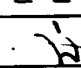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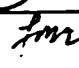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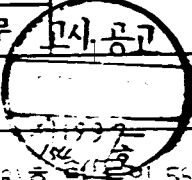



# 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: (02) 731-4767 / 전승 731-4368  
 처리부서 : 도로관리과·시장관리과 중 교통안전정무

문서번호 : 도관58710- 592  
 시행일자 : 1997. 3. 27  
 (제 1안)  
 수신 : 내부결재

취급		시	장
부서	내		
국장	전결		
과장		교통운영과장	
계장		법무담당관	김사필
가안	한정무		

주 목 : 차량운행제한 공고

1. 건설안전관리본부 호관 58710-414197, 414198호 및 단일 58700-58700호

4.21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양화대교구교의 전면통행금지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으로 양화대교신교가 양방향(각 2개차로)통행으로 변경되고, 우회도로 확보를 위한 서강대교북단첨전로연결가교가 개통됨에 따라.

3. 양화대교신교 및 서강대교북단첨전로연결가교의 차량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통행 및 운행제한 공고 요청이 있어 도로법제53조·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6조의2·제2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따로붙임의 공고(안)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.

가. 양화대교구교·양화대교연결램프(공항→양화대교방향진입램프 제외)

○ 전면통행금지

나. 양화대교신교

○ 강남 → 강북방향 : 2개차로  
 [ 1차로: 일반차로  
 2차로: 버스전용차로

○ 강북 → 강남방향 : 2개차로  
 [ 1차로: 버스전용차로  
 2차로: 일반차로

○ 일반차로: 16인승이상(중형)승합차 및 총중량3톤이상 화물·특수자동차

다. 양화대교진입램프(공항 → 양화대교 방향)

○ 노선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

라. 서강대교북측창전로접속가도로(양방향)

- 3.5인승이상(대형)승합차 및 총중량10톤이상 화물·특수자동차
- 통과높이 : 3.2M이상

- 따로붙임 : 1.차량통행·운행제한 공고(안) 1부.  
 2.차량운행제한 공고(안) 1부.  
 3.위치도 각1부. 끝.

(제 2안)

수 신 공보담당관

제 목 시보 게재 의뢰

1. 아래와 같이 시보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 구분 :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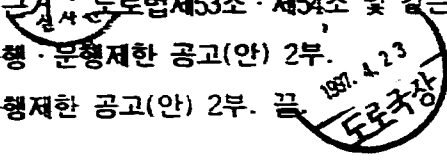
나. 게재 건명 : 차량운행제한 공고

다. 게재 내용 : 따로붙임

라. 법적 근거 : 도로법제53조·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6조의2·제28조의3

따로붙임 : 1.차량통행·운행제한 공고(안) 2부.

2.차량운행제한 공고(안) 2부. 끝



(제 3 안)

수 신 서울지방경찰청장

참 조 교통관리과장, 교통안전과장

제 목 차량운행제한 공고 통보

1. 우리시 호관 58710-414('97. 4. 18)호 및 토일 58700 -524('97.4.21)호와  
관련입니다.

2. 양화대교구교의 전면통행금지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으로 양화대교신교가  
양방향(각 2개차로)통행으로 변경되고, 우회도로 확보를 위한 서강대교북단창전로연결  
가교가 개통됨에 따라,

3. 양화대교신교 및 서강대교북단창전로연결가교의 차량운행 위험을 방지하  
기위해 도로법제53조·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8조의2·제2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따  
로붙임의 공고(안)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1. 차량통행·운행제한 공고(안) 1부.

2. 차량운행제한 공고(안) 1부.

3. 위치도 각1부. 끝.

(제 4 안)

수 신 건설안전관리본부장

참 조 ~~건설~~관리부장·토목1부장

제 목 차량운행제한 공고 통보

1. ~~토~~관 58710 - 414('97. 4.18)호 및 토일 58700 - 524('97. 4.21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대호로 요청한 차량통행 및 운행제한 공고는 도로법제53조·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8조의2·제2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, 통행·운행제한에 따른 안내·규제표지판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설치 및 적절한 단속방안을 강구·시행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1. 차량통행·운행제한 공고(안) 1부.

2. 차량운행제한 공고(안) 1부.

(제 5 안)

수 신 영등포·마포·용산구청장

참 조 토목과장

제 목 차량운행제한 공고 통보

1. 건안 ~~토~~관 58710 -414('97. 4.18)호 및 토일 58700 -524('97.4.21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양화대교구교의 전면통행금지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으로 양화대교신교가 양방향(각 2개차로)통행으로 변경되고, 우회도로 확보를 위한 서강대교북단참전로연결가도가 개통됨에 따라,

3. 양화대교신교 및 서강대교북단참전로연결가교의 차량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제53조·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8조의2·제2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따로붙임의 공고(안)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: 1. 차량통행·운행제한 공고(안) 1부.

2. 차량운행제한 공고(안) 1부.

3. 위치도 각1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258

공 고 안

서울특별시공고 제 1997 - 154 호

차량통행 및 운행제한 공고

도로법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·같은법시행령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 및 운행을 제한하고자 같은법 제53조제2항·같은법시행령제 26조의2 및 제54조제5항·같은법시행령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.

1997년 4 월 일

서울특별시장

심사관

도로의 종류	· 특별시도	시 설 명	· 양화대교
통행금지·운행제한대상	내 용	구 간	
	· 전면 통행금지	· 양화대교 구교 전구간 · 양화대교 연결램프(공항 →양화대교방향 제외)	
기 간	· 강남 → 강북방향 : 2개차로 ┌ 1차로는 일반차로 └ 2차로는 버스전용차로	· 양화대교 신교 전구간	
	· 강북 → 강남방향 : 2개차로 ┌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 └ 2차로는 일반차로		
이 유	※ 일반차로는 16인승이상 승합차 및 1.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· 공항 ⇒ 양화대교 : 진입램프 - 노선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		
문 의 처	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 (전화번호:731-6766~8)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교량관리부(전화번호:3708-2381~7)		
<위 치 도>생략(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, 건설안전관리본부 교량관리부에 도면 비치)			